

##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5
----------	-----

발의년월일 : 1993. 3. 6.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 제안이유

-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를 대통령령 제13790호('92. 12. 26)로 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령에 의거 심의대상공사금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증원하여 현행제도의 기능을 일부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설계심의대상금액을 5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의 공사를 → 1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 공사로 개정.
-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50인이내 → 80인이내로 개정.
- 공무원의 위원수를 7인 → 12인으로 개정
- 회의개의를 3분의 2이상 출석 → 과반수출석으로 개정
- 소위원회 위원수를 5인이상 10인이내 → 7인이상 12인이내로 개정.

### □ 첨 부

1.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조표 1부
3.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발췌) 1부

## 충청북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50인이내”를 “80인이내”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 단서중 “7인”을 “12인”으로 한다.

제6조 제2항중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을 “재적위원 과반수”로 한다.

제9조 제1호중 “시행하는 총공사의 5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을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으로 하고 동호 단서를 삭제한다.

동조 제2호중 “공사로서”를 “건설공사로서”로 하고, “50억원 이상 100억원미만으로서”를 “10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으로 한다.

동조 제3호중 “제1호에 해당하는”을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5천만원이상인 공사, 다만 단순한 소요건설자재의 증감이나 기타 기본적인 설계. 또는 공법등의 변경이 아닌 경미한 설계변경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를 “1억원이상인 공사이고 공사발주관서의 장. 또는 허가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로 한다.

제10조 제2호중 “제95조의 3. 제3항의”를 “제112조 제5항의”로 한다.

제14조 제1항중 “위원회의 기능”을 “위원회의 심의”로 하고, “각 분야별”을 “분야별”로, “구성할 수”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로 한다.

동조 제2항중 “위원5인이상 10인”을 “위원회의 위원7인이상 12인”으로 한다.

동조 제3항중 “위원은”을 “위원장은”으로 한다.

동조 제4항중 “위원장은”을 “위원은”으로 한다.

제15조중 “직원이 아닌”을 “①도소속 공무원이 아닌”으로 한다.

동조 제2항신설 “②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검토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u>50인이내</u>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u>건설국장</u>이 된다.</p> <p>③위원장은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충청북도(이하“도”라 한다.)산하의 5급 이상 공무원과 민간인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다만, 공무원인위원은 <u>7인</u>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6조(회의)</p> <p>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u>재</u>적위원 3분의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2조(위원의구성) ①</p> <p style="text-align: center;">80인이내</p> <p>②</p> <p style="text-align: center;">건설도시국장</p> <p>③</p> <p style="text-align: center;">12인</p> <p>②</p> <p style="text-align: center;">재</p> <p style="text-align: center;">적위원 과반수</p>			

현	개 정 안
<p>제9조(건설기술심의 대상) 위원 회의 건설기술심의(이하“심의”라 한다)대상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총공사의 5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의 건설공사. 다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액이 30억원이상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p> <p>2.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억원이상 100억원미만으로서 당해 건설공사의 허가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공사</p>	<p>제9조(건설기술심의 대상) 위원 회의 건설기술심의(이하“심의”라 한다)대상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 건설공사.</p> <p>2. 건설공사로서 10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으로</p>

현행	개정안
<p>3. 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의 그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로서 당해 공사금액이 5천만원이상인 공사. 다만 단순한 소요건설자재의 증감이나 기타 기본적인 설계 또는 공법등의 변경이 아닌 경미한 설계변경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p>	<p>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 ..... 1억원 이상인 공사이고 공사발주관서의 장 또는 허가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p>
<p>제10조(심의범위)</p> <p>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 공법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p>	<p>제10조(심의범위)</p> <p>2. .... ..... 제112조 제5항의 ..... .....</p>

현행	개정안
<p>제14조(소위원회등) ①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u>각분야별 소위원회</u>를 구성할 수 있다.</p> <p>②소위원회는 <u>위원5인이상 10인이내</u>로 구성한다.</p> <p>③소위원회 <u>위원</u>은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p> <p>④소위원회 <u>위원장</u>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회위원 중에서 지명한다.</p>	<p>제14조(소위원회등) ①위원회의 심의를</p> <hr/> <p style="text-align: right;">분야별</p> <hr/> <p style="text-align: center;">구성하여 운영할 수</p> <p>② 위원회의 <u>위원7인이상 12인</u></p> <p>③ 위원장은</p> <p>④ 위원은</p>
<p>제15조(출석수당등) <u>직원이 아닌</u>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5조(출석수당등) ①<u>도소속 공무원이 아닌</u></p> <hr/> <p>②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검토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p>